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2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리딩투자증권㈜

2. 조치내용

○ 과태료 5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

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리딩투자증권㈜은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인 A사에게 ㉮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한 지시·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12호의2